

창업기획자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) 공시송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에 따른 창업기획자 행정조치에 앞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·이사·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5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<청문 개요>

- 청문목적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벤처투자법)」 위반 창업기획자에 대해 등록취소 관련 청문 실시
- 청문일시 : 2026년 8월 19일(수), 11시 ~
- 청문장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
- 청문대상 :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 반복위반 창업기획자 37개사

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청문 대상(창업기획자)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(별지 제3호서식)할 경우 대표이사 외 임직원, 변호사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
5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)>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레*징 (대표이사 김*수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***호 (성수동2가, 서울숲드림타워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올**츠 (대표이사 윤*주)				
	주 소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3** 용인****회관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후*후 (대표이사 선*규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** 1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오너****아 (대표이사 이*원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** *층(을지로6가, 굿**시티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6.1.21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씨앤**이 (대표이사 정*용)				
	주 소	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** **대학교 창업보육센터 *층 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패****트너스 (대표이사 송*환)				
	주 소	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** 행현리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6.2.25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티***트너스 (대표이사 이*석)				
	주 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** 대맥주차빌딩 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씨*****스 (대표이사 우*제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**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온***이 (대표이사 윤*열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향도로 **(천호동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킵****시아 주식회사 (대표이사 박*규)				
	주 소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***번길 90 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기***치 (대표이사 임*철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** **빌딩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아***커 (대표이사 김*일)				
	주 소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* (대흥동) 4층 ***호(대흥동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시**랩 (대표이사 권*준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**길 5 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엑**리 (대표이사 윤*근)				
	주 소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** , 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프*즈 (대표이사 이*원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**길 100 (양재동, **빌딩) 5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블***프터스 (대표이사 박*용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** (서초동, 대룡**타워) **층, *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스테**니오 (대표이사 장*현, 김*우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** **빌딩 7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커*****이티드 (대표이사 김*욱)				
	주 소	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**번길 70 (안동) *층 1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카****연구원 (대표이사 이*은)				
	주 소	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22-**8 2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케***엠씨 (대표이사 정*욱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**3 (사당동) 3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브****어 (대표이사 류*주)				
	주 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**로 2* 1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네***퍼니 (대표이사 신*식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** 5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심*****컴*니 (대표이사 김*웅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* (사직동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한****처투자 (대표이사 박*현)				
	주 소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** 부산****센터 *동 2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아*****스 (대표이사 신*원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**길 45 엔**타워 9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헥사***스 (대표이사 김*욱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** (개포동, 지성빌딩) 3층 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피****처스 (대표이사 박*준)				
	주 소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** (하동, 광고****턴타워) A동 B***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애***스 (대표이사 제*선)				
	주 소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** (별내동) 3**-8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스****스유한책임회사 (대표이사 신*정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** (신림동) 관악S밸리(마이워크스페이스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블****베스트 (대표이사 양*정, 최*식)				
	주 소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* (삼풍동) 경북****크 글로***동 2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주식회사 미****스 (대표이사 윤*환)				
	주 소	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통골로**번길 ** (덕명동) 1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<u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</u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<u>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u>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쿵***너스 (대표이사 정*윤)				
	주 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** (삼산동, **타워) 4**-5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더오***스 (대표이사 박*성)				
	주 소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* (이동, 보은타운) 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스테***이 (대표이사 강*모)				
	주 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** (수내동, ****팰리스) 7층 *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세종***구원 (대표이사 이*훈)				
	주 소	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** (월평동) *층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5.12.30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<u>창업기획자는</u>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<u>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</u>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게*****하이트 (대표이사 이*형)				
	주 소	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** (울곡동, 울곡*****X) 3**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6.1.21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성명		이 종 건				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창업기획자 등록취소					
당사자	법인명	테***폼 (대표이사 서*석)				
	주 소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* (창곡동) 호텔동 지**층 1*번 매장 (밀*****티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사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1차·2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* 1차 행정처분(경고, 2026.1.21.), 2차 행정처분(시정명령, 2026.5.26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9990호, 2024.7.10. 시행) 제72조(보고와 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·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 3. 창업기획자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(생 략) 11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7조제1항 (대통령령 제35698호, 2025.8.5. 시행) 제47조(보고와 검사)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. 2.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: 월별 보고. (후 략)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」 제8조제1항 제8조(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)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 서 명	투자관리감독과	담당자	장재 환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526호(어진동)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jhjang3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	청문일시	2026년 8월 19일(수) 오전 11시00분		청문장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, 지하1층 회의실 (VR빌딩, 한국벤처투자)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법무법인 이후 변호사			
	성명	이 종 건				